시 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92
결재일자	2013.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2013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

2013. 3.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 민 :	유 □ (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 (장애인주간,단기시설 연합회)	무 □
	● 전 문 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 및 기타 고려사항	● 법 령 규 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무 □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 앙 부 처 :	유 □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 기 업 :	유 □ ( )	무 ■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	● 관 계 기 관 :	유 □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 ( )	무 ■

2013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비용의 보조)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과제 4-1(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지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운영 활성화계획('12.7)

□ 시설운영 개요

○ 시설현황 : 36개소 448명

○ 이용인원 현황('13,1.1기준)

구분	계	8명	9명	10~15명	16~20명	21명이상
시설수	36개소	2개소	3개소	26개소	4개소	1개소

○ 구별 현황('13,1.1기준)

구분	1개소	2개소	3개소	6개소	미설치(8개구)
자치구	중랑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광진구 관악구	종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북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 유형、성별은 시설 특성에 맞춰 자체 선정

○ **지원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의거 설치된 시설
-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 법인 운영 시설

○ **운영목적**

- 일시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하여 장애인 보호 및 가족기능 회복 지원

□ 주요사업

○ **자립생활지원**

- 일상생활(식·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지식 및 기술 지원
-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함

○ **사회적 인지기술**

-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이해시키는 교육
- 사회적응훈련을 통한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 도모

○ **여가활동 · 정서안정**

- 새로운 환경과 접할 수 있는 야외활동,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 지원
-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습득기술 일반화 도움

○ **기 타**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

Ⅱ 추 진 실 적

□ 연도별 추진실적

○ **연도별 예산 현황**(시비 100%)

(단위 : 천원)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17,723,575	2,575,170	3,084,204	3,096,180	3,724,873	5,243,148

○ 연도별 시설 확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규확충	1	3	3	5	2
시 설 수	23	26	29	34	36

□ 2012년 주요 추진실적

○ 예산지원 : 4,827,372천원(36개소)

○ '12년 단기거주시설 2개소 확충 : 34개소 ⇨ 36개소 (2개소 ⇧)

구분	시설명	운영법인	소재지	이용자 유형	이용자수
7월 신규	군자 작은예수의집	사복)작은예수수녀회	광진구 능동 21길 14-7	여성	10
10월 신규	덕유린	사단)종로성북구 장애인부모회	중로구 숭인1동 70-6	남성	14
10월 신규	센터봄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강동구 천호대로1210 4층	혼성	12

※ 단기시설(실로암) 1개소 주간시설 전환으로 실제 증가 2개소

○ 2012년 3개소를 신규 확충하였으나 단기시설 1개소가 주간시설로 전환되어 2개소 증가, 현재 36개 시설에서 448명이 이용 중으로 시설당 이용자는 평균 12명임

○ 여성장애인 전용시설 7개소 및 남성장애인 전용시설 9개소가 있고, 청소년만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시설 이용자의 장애 유형별로는 혼합시설 29개소, 전용시설 7개소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위주의 장애유형 혼합 시설이 대부분임

○ 단기거주시설 평가실시

- 대상시설 : 단기거주시설 29개소
- 기 준 : 2011.1.1.이전 설치 운영시설
- 평가내용 : 시설 운영평가 및 이용인 만족도 조사
- 평가방법 및 절차
  - 2012년 개발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시설 자체평가 후 현장평가
  -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이용인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결과

(단위 : 개소수, 점)

구분 \ 유형	2009 주간보호시설 (독립)	2012 주간보호시설 (독립)	2009 주간보호시설 (병설)	2012 주간보호시설 (병설)	2009 단기거주시설 (독립·병설)	2012 단기거주시설 (독립·병설)
개 소	36	61	36	36	18	29
최 소 값	35.00	35.22	59.10	59.14	33.45	54.21
최 대 값	91.12	99.29	95.91	99.87	94.65	100
평균	68.49	78.18	85.11	91.59	73.52	80.29
표준편차	15.85	15.51	9.17	8.49	17.68	14.42

-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 : 10,000천원
  - 산출근거 : 단기거주시설 5개소 × 종사자 4명 × 50만원/1인당
- 부진시설 관리
  - 기준(60) 점수 미만시설(2) 품질개선 과제 부여 및 개별 관리
  - 개선과제 수행 후 재평가 실시(서울시 복지재단 별도 계획)

Ⅲ '13년 사업계획

□ 사업목표

○ 단기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정상화를 위한 소규모 시설의 지속적 확충

○ 평가 결과 부진 시설 관리 및 피드백을 통한 운영 개선 지원

□ 세부추진계획

①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 개선

○ 주요 개선사항

구분	근무인원 (명/시설)	'12년 지급 기준	'13년 개선안
단기 거주시설 41개소	4명	• 인건비 ▸ 시설별 4명 종사자 호봉 평균 산출 후 기준 호봉에 따라 지급	• 인건비 ▸ 시설별 4명 종사자 실제 호봉에 따라 지급 ▸ 단독시설장 4급 기준
		• 운영비(사회교육비 포함) : 6,600천원(인건비와 혼합)	• 운영비(사회교육비 포함) : 4,000천원 ※ 인건비와 분리

○ 인건비 지급기준 : 각 시설별 종사자 실제 호봉에 따라 지원

② 신규시설 5개소 확충 및 성별구분 : 36개소('12년) ⇒ 41개소('13년)

○ 시　기 : 상반기 3개소, 하반기 2개소

○ 방　법 : 법인에서 구청에 설치 신고 ⇨ 적정 운영 시설 보조금 지원

○ 신규시설 성별 구분 설치 유도 및 기존시설 성별 운영 전환 지원(19개소)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는 법인 운영 시설만 지원 가능

③ 최중증 장애인 전용시설 인증제 시행 - 별도계획

○ 최중증 장애인 전용시설 3개소 운영(신규)

- 최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리고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중증 장애인 전용시설(정원의 100%) 확충

○ 인증제 도입을 통한 시설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 도모

④ 시설 운영평가 결과 부진시설 관리 및 품질향상 지원

○ **대　상 : 평가 결과 60점 미만 부진시설 2개소**

○ **방　법 : 품질관리단의 자문 및 모니터링 후 품질향상 평가**

○ **일　정**

- 품질향상 사업 설명회 : 2013. 3월
- 자체 품질개선 계획 수합 및 검토 : 2013년 4~5월
- 품질 관리단 구성 및 사후 관리활동 수행 : 2013. 2~10월
- 개선성과 평가 : 2013. 11~12월

※ **품질향상 지원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시설은 '14년 운영계획 수립시 보조금 삭감, 지원중단 등 조치**

⑤ 이용자 관리 DB 구축

○ **목　적 : 시설 이용자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방　법 : 장애인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스템 구축**

○ **일　정**

- 시스템 구축 : 2013. 3월중
- 데이터 입력 및 점검 : 2013. 3~4월

○ **대 상 :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이용자**

⑥ 시설 지도·감독 강화

○ **시설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방만하게 운영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시　　기 : 2013년 3 ~ 4월 중 시설 지도·점검 실시
- 방　　법 : 점검단 2개조 구성으로 주간 보호시설 이용 실태 확인
- 조치계획 : 실 이용 현황을 점검하여 정해진 인원의 종사자를 장기간 고용하지 않거나, 주간보호시설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이용자수가 적을 시 보조금의 일부 환수 등 조치

○ 상시 시설 자체 점검 체제 운영

- 시 기 : 2013년 5월 중 자체점검표 시달

⇒ 이용실태 점검 통해 시설 운영상황에 적합한 표준 점검항목을 개발하여 시달

- 방 법 : 자체점검표를 자치구를 통해 시설에 배부하여 상시 자체 점검

- 기대효과

- 시설 스스로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서비스 품질을 상향평준화하고 규정 위반소지를 사전에 예방
- 자체 점검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운영 개선 기회 부여로 시설 운영 내실화

Ⅳ '13년 예산집행 계획

□ 2013년 예산 재배정 계획 : 6,188,837천원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복지수당	자격수당	보조인력 인건비	인증시설 지원	성별전환 및 기타
6,188,837	4,664,034	164,000	445,280	50,340	658,583	111,600	95,000

○ 인건비 : 4,560,285천원(신규확충시설 5개소 5% 25,944천원 감 반영)

시설당 종사자 호봉 평균	시설수 (개소)	종사자(명)	1인 인건비 지급 기준(원)	연간 지급액(원)	비 고
계	41	330		4,689,978,868	
2호봉	2	4	25,823,492	206,587,936	· 신규 시설 3호봉 적용
3호봉	7	4	26,508,232	742,230,496	
4호봉	4	4	26,980,469	431,687,504	
5호봉	7	4	27,733,293	776,532,204	
6호봉	5	4	28,725,985	574,499,700	
7호봉	7	4	29,645,842	830,083,576	
8호봉	3	4	30,425,029	365,100,348	
9호봉	4	4	31,369,498	501,911,968	
10호봉	1	4	32,148,684	128,594,736	
11호봉	1	4	33,187,600	132,750,400	

○ 운영비 : 164,000천원

- 1개소당 연 4,000천원(41개소 기준)

○ 종사자 복지 수당 : 445,280천원

- 5년 이상 : 월290천원, 5년 미만 : 240천원

○ 자격 수당 : 50,340천원

- 자격수당 : 월 30천원, 기타수당 월 20천원

○ 보조인력 인건비 : 658,583천원

- 1시설당 1인 : 16,063천원 x 41개소

○ 최중증 전용 인증시설 지원 : 111,600천원

- 환경개선비 6,000천원×3개 = 18,000천원
- 운영비추가 3,000천원×3개 = 18,000천원
- 종사자 지원 25,200천원×3개 = 75,600천원

○ 성별구분 전환지원 : 95,000천원

- 5,000천원 × 19개소

□ 보조금 지원방법

○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원하고 집행 후 잔액 반납 조치

○ 집행 방법 : 시 ⇒ 자치구 ⇒ 시설(분기별 신청에 의거 자치구 재배정)

V 행 정 사 항

○ 세부운영계획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

- 매분기 개시 전월 9일까지

○ 분기별 사업비 배정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 → 시

-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

○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수합 : 시 → 자치구**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주간보호시설 협조사항**

- 장애인 인권헌장 등 인권보장 관련 자료 생활실 게시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안내문 생활실 게시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안내(안)** 〉

■ **인권센터 접수/상담실**

- 위치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내 인권센터(2133-6378/9)

■ **신청방법 : 문서,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전화**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번지)
- 전 화 : 2133-6378/9, 팩스 : 2133-0797
- 이메일 : sangdam@seoul.go.kr
- http://www.seoul.go.kr/v2012/oneclick/

붙임 2013년 시설별 인건비 산정 종사자현황표 1부